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안내서

2015. 8



- 본 안내서는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합니다)』 제50조의4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제고 및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본 안내서의 판권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소유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또한, 가공·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 안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방지센터 홈페이지(http://www.spamcop.or.kr) 자료실에 게시됩니다.

-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 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 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 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 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 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용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목 차

I. 개 요 ··································
· 개 요 ·································
2. 필요한 조치의 성격
Ⅱ. 필요한 조치의 구체화
1. 개요
2. 역무제공 거부
3. 정보통신망 및 서비스 취약점 ···································
4. 정보통신망 취약점
5. 서비스 취약점
Ⅲ. 이외의 필요한 조치 ·······14
1. 개요1
2. 타법에서 요구하는 조치 ·······14
3.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객관적 노력15
4. 사업자간 자율 규제 ·······15
4. 사람사건 사뀰 ㅠ세
[별표 1] 필요한 조치 정리표16

I. 개 요

1.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구성 및 규제의 성격

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구성

-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한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
-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1)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 2)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
- 제2항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서비스 이용약관에 포함하도록 규정
- 제3항은 역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역무제공 거부를 당하는 이용자 등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률적 책임 부담

- 광고성 정보 전송을 매개하며 수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스팸 없는 쾌적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함
- 제50조의4 제2항에서 "~포함하여야 한다", 동조 제3항에서 "~알려야 한다", 동조 제4항에서 "~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의무를 부여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막기 위해 단순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 법률적책임을 부담 지움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사 서비스 이용약관에 스팸전송과 관련하여 역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과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시행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여야 함

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에 의한 규제의 성격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그 서비스의 이용자와 계약을 통해 이용자가 법정 소정의 부정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임
-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과 관련하여 제2항을 해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와 체결 하는 계약에 "이용자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약관)에 이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 만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와의 계약에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에 반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이는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감독의무위반으로 피해자에 대해 해당 역무를 이용하여 불법광고성정보를 제공한 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부진정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
-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은 '필요한 조치'의 예로서 (i) 해당 역무의 제공 거부, (ii)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법 규정에 많은 사례를 모두 열거할 수 없으므로 몇 가지 예를 들어 규정한 예시 규정¹⁾이라 봄

¹⁾ 법령에 언급한 것들은 예시에 불과하여 예시된 것 이외에도 인정을 하는 것이 예시규정이며, 열거된 내용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열거규정임

2. 필요한 조치의 성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즉 역무제공 거부의 경우 계약(이용약관)에서 이와 관련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지만, 서비스이용자가 해당 서비스 이용 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불법스팸 전송 행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의 내용이 신의성실 내지 권리남용의 법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정당한 조치로 읽혀질 것임
-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용이 정지되거나 중단된 대포폰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본인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해당 역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해당 역무를 이용하는 자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에서 규정한 불법을 범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의 불법적인 악용 및 임의 조작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조치를 취하라는 것 등은 법 제50조의4제4항에서 규정한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Ⅱ. 필요한 조치의 구체화

1. 개요

• 정보통신망법제50조의4제4항은 필요한 조치의 예시로 (i) 역무의 제공 거부와 (ii)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 개선으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이는 필요한 조치에 대한 예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검토함

2. 역무제공 거부

가. 개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법제50조 및 제50조의8에 위반하는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이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정지 및 계약해지(역무제공 거부) 등을 하여야 함
- '역무제공 거부'는 만일 정보통신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이후 해당 특정 전송자가 다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후적 조치**를 의미함

나. 역무제공 거부 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전송되는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임을 확인하여 준 경우 스팸 전송자에 대해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정지' 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해지' 하는 것
-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범위는 경우에 따라 해당 전송자에게 제공되는 전체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전체 회선 이용 정지 및 계약해지), 불법행위에 사용된 특정 서비스에만 국한될 수도 있음(일부 회선 이용정지 및 계약해지)

• 불법 스팸 전송으로 인한 역무제공 거부에 대한 사항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기하여 불법 스팸 전송시 이용약관에 따른 이용 정지 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3. 정보통신망 및 서비스 취약점

가. 개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법제50조 및 제50조의8에 위반하는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이에 대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및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 개선'은 정보통신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기 쉽도록 하는 결함 내지 허점을 제거 내지 보완하는 등의 **사전적·예방적 조치**를 의미
-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구조적 ·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운용상의 문제도 포함될 수 있으며, 서비스 취약점 역시 운용상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구조적 · 기술적 문제도 존재할 수 있음.
-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서비스 취약점'은 '정보통신망 및 서비스의 구조적·기술적 및 운용상의 문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취약점 개선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개발(보완) 및 운용상의 문제 등을 모두 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내용

• 정보통신망 취약점으로는 ① 번호 변작과 관련한 의무사항 이행 및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은 경우, ②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웹팩스 사업자가 웹팩스 전송 및 부가역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원발신번호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③ 침해사고 모니터링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음

• 서비스 취약점으로는 ①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여 다른 명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②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④ 다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상호접속 협정 또는 망연동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을하지 않는 경우, ⑤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사실 확인 및 외부 감독기관의 불법스팸 전송 사실에 대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차단조치를하지 않는 경우, ⑥ 이메일 스팸 발송 시도에 대한 전송차단을 하지 않는 경우, ⑥ 이메일 스팸 발송 시도에 대한 전송차단을 하지 않는 경우, ⑥ 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한 신원을 명확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 ⑧ 부정 사용자(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이 있음

4. 정보통신망 취약점

- 가. 번호 변작과 관련한 의무사항 이행 및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은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 제1호²⁾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발신번호가 변작된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해당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전송자의 정상적인 발신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전송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과 하고 있음
-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 제3호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발신번호가 변작된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전송자에 대한 역무제공 거부 의무를 부과 하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할 수

²⁾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 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 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있는 조치에는 특정 불법스팸 전송자가 다시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역무제공을 거부하는 조치가 포함되는 바, 이는 기본적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의 추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다 할 것임

- 만일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불법스팸 수신자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불법스팸 전송 경위를 불분명하게 신고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로써 해당 불법스팸 전송자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거나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됨
-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나 정당한 사정없이3) 발신번호 변작을 허용하는 것은 (i)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3항의 조치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인 점, (ii) 불법스팸 발송 방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스팸의 발송을 좀 더용이하게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4 제4항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 취약점'이라 볼 수있음4)
- 이통사 및 문자발송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변작된 번호로 광고성 정보가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된 경우 불법 스팸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회선을 차단 조치를 하거나 전송자가 정상적인 전 화번호로 정정하여 광고성 정보를 보내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
- 또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2015-32호)" 제5조5)에 따라 "사설교환기 번호변작 탐지 시스템" 구축·운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6)

³⁾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 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u>다만, 공익을 목적으로</u>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⁴⁾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발신번호 변작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i)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ii) 다른 법률에서도 이와 같은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히 직접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발신번호 변작 행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적어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를 부담하거나 조치의무가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행위가 필요할 것인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는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방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⁵⁾ 제5조(발신번호 변작 확인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설전화교환기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 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⁶⁾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5년 내에 자체적으로 기술적인 조치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

-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웹팩스 사업자가 웹팩스 전송 및 부가역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원발신번호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 팩스 스패머는 변작된 팩스 번호로 팩스스팸을 전송하고 있으며, 발송자 구분정보가 표기 되지 않은 팩스가 전송될 경우 발송자 확인 및 추적이 불가하여 발송자 확인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조치가 필요
- 웹팩스 전송 시, 팩스 상단 규격(FROM)에 원발신번호⁷⁾를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망 취약점에 해당할 수 있음
 - ※ 기간통신사가 웹팩스 사업자에게 직접 부여한 번호(원발신번호) 이외에는 전송불가조치, 발송자(웹팩스사업자)가 원발신번호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기간통신사가 직접 표기하여 전송해야 함

< 웹팩스 수신 화면 >

2015-03-21 Fri 14:23 FROM: 0212345678(필수 표기) TO: 0243215678 ID:#12345 1/2 팩스 광고 본문 불법 팩스스팸(광고 본문)에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중임

다. 침해사고 모니터링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설교환기 발신번호 변작탐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 예정

⁷⁾ 원발신번호(기간통신사업자가 웹팩스 사업자에게 할당(부여)해 준 번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시스템 침해에 의한 스팸발생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침해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
-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통신설비 보호를 위해 서비스가 구동중인 네트워크 구간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한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설치 운영
-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접근은 인가된 접속지로부터 인가된 자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접근제어를 적용하여 운영
- 침해 및 악성코드 감염 등과 같은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환경설정 및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발견된 취약점 제거 및 보안조치
-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침입시도 및 이상 징후 탐지 등을 위해 로그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로그는 최소 3개월 이상 유지·관리 등

5. 서비스 취약점

가.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여 다른 명의자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 개인 가입자의 경우, 타인의 명의를 대여 또는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실명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가입신청시 제출하는 신분증의 사진을 대조하여 본인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취약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경우 스팸전송을 목적으로 사망자나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명의로 개통하는 것을 묵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서비스 취약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법인 가입자에 대해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 등 기본 구비서류 외에 최근의 세금납부 증빙자료, 보증보험증권 등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 또는 유령 사업자 명의로 서비스를 개통하는 경우 서비스 취약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KAIT에서 운영하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불법스팸 상당수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된 소위 대포폰 등을 통해 전송되고 있으며, 이는 발신자 정보 추적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어 근본적인 스팸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팸 전송을 위해 명의를 도용하여 하는 서비스 가입을 차단할 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8)제2항은 일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 통신역무 제공 관련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동법은 가입자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부정가입방지 시스템'구축을 규정하고 있음
-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위탁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 계약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음

⁸⁾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위탁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u>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u>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정가입방지 시스템은 사망자의 주민번호 또는 분실/도난/위·변조 신분증 등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포폰 개통 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구축 및 운영을 담당⁹⁾
-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 여부 확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i)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 2항의 본인 여부 확인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인 점, (ii) 대포폰 개통을 방치함으로써 불법스팸의 발송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에 해당 할 수 있음¹⁰⁾

다.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2항은 동법 제1항 및 제4항의 역무제공 거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약관에 이를 규정하도록 의무 부과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불법스팸 방지와 관련한 조치, 책임, 한계 등 불법 스팸 차단과 관련한 표준약관에 주요 내용의 미반영시 서비스 취약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서비스 이용약관 규정이 현행 법 강행규정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정이 되지 않는 경우 취약점에 해당할 수 있음

라.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상호접속 협정 또는 망 연동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하려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 등록을 하여야 함
- 계약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⁹⁾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5에 따름

¹⁰⁾ 그 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대량문자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신청자가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객관적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방법에 따른 본인 여부 확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법 스팸이 발생하게 된 경우 확인을 소홀히 한 사업자는 서비스 취약점에 해당할 수 있음

마.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사실 확인 및 외부 감독기관의 불법스팸 전송 사실에 대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차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KISA에서 제공하는 스팸종합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자사발 스팸이 전송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 스팸이 전송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차단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하지 않은 경우 취약점에 해당 할 수 있음
- 사기, 도박, 불법의약품, 성매매, 불법대출 등의 불법 스팸이 지속적으로 전송되는 경우 해당 번호 또는 계정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특히 문자중계사업자는 자사의 이용자가 전송한 인터넷발송 문자 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번호가 불법스팸 번호¹¹⁾로 확인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 조치하여야 함

바. 이메일 스팸 발송 시도에 대한 전송 차단을 하지 않는 경우

- 이메일 발송을 위해서는 ISP,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이동통신사 등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함
- 이들 사업자는 가입자의 단말이 스팸 발송에 악용되지 않도록 망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초고속인터넷 대역 이메일 발송포트 사용제한'임
- 전세계 유통되는 스팸메일의 약 80% 이상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봇넷)에서 발송되는 것이어서, '초고속인터넷 대역 이메일 발송포트 사용제한'이 반드시 필요
-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정보통신망 이용자(가정 가입자, PC방, VPN사업자 등)에 한해 불법 이메일 스팸발송에 악용되는 서비스 포트(25번포트, SMTP)를 차단하지 않은 경우 취약점에 해당할 수 있음

¹¹⁾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종합모니터링시스템에 확인된 자사발 스팸 번호 등

- 특히 KISA가 이메일 스팸 트랩으로 탐지하여 알려준 불법스팸 발송 IP(25번포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지 않는 경우 취약점에 해당할 수 있음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ISP/SO/이동통신사)는 시행 전 이용자에게 이메일, 고지서, 팝업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고 스팸 전송시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대역에 대하여 25번 포트 차단 시행

사. 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한 신원을 명확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

-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스팸 전송자를 찾아내 최종적으로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스팸 전송자의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
- 정보통신망법 제64조는 스패머 처벌를 위해 스패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보다 철저한 고객정보 관리가 요구되며, 고객의 최신 정보를 갱신·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는 경우

아. 부정 사용자(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 대리점/판매점과의 계약사항에 서비스 가입신청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금전적 불이익 및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스팸전송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다수 개통해준 대리점/판매점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계약사항에 따른 자율적인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

Ⅲ. 이외의 필요한 조치

1. 개요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필요한 조치'라 함은 문언해석상 해당 정보통신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조치를 말함
- '취약점 개선'이 정보통신망 및 서비스 단계에서 불법스팸 전송을 사전에 방지하는 모든 조치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역무제공 거부와 같은 사후적 조치의 경우, '역무제공 거부'에서 더 나아가 불법스팸 전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서,
 ① 해당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신고, 고발 등의 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불법스팸 및 전송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도 사후적 조치로 고려하여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법은 '역무제공 거부' 및 '정보통신망 및 서비스의 취약점 개선'을 필요한 조치에 대한 예로 두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구체적인 필요한 조치들 외에 스팸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로 다음과 같이 추상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볼 수 있음

2. 타법에서 요구하는 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변작방지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이용과 같이 타법에 의무를 부과한 조치가 스팸 대응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3.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객관적 노력

-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스팸이 전송된 사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한 경우 즉각적으로 해당 관계자 및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전송자(계정이 도용된자 포함)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송자에게 발송을 금지하는 안내를 통해 스팸 발송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유관 사업자간 스팸전송 사업자 정보나 관리가 미흡한 재판매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여러 서비스를 이동하며 스팸을 전송하는 행위를 방지 하도록 하여야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도록 하여야 함

4. 사업자간 자율 규제

- 대량문자전송사업 및 휴대전화 판매사업 등은 상위사업자 부터 피라미드 형식으로 하위사업자 까지 각각의 계약에 따라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계약조건 강화(불법스팸 전송 및 불법스팸 전송 고객 유치 등의 경우 계약 해지 등)를 통해 하위 사업자를 스팸 차단을 위해 통제를 함으로써 스팸이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함
- 특히 대량문자전송사업의 경우 상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계사나 재판매사의 '통신회선 전송속도를 저하'시키거나, '통신회선 수를 축소' 하는 등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하부 사업자의 스팸자율규제 이행을 독려 하여야 함

[별표 1] 필요한 조치 정리표

구분	내용(필요한 조치)
역무제공 거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스팸을 전송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정보통신망 취약점	 번호 변작과 관련한 의무사항 이행 및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은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웹팩스 사업자가 웹팩스 전송 및 부가역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원발신번호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모니터링 및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서비스 취약점	1)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여 다른 명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KAIT에서 운영하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4) 다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상호접속 협정 또는 망 연동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5)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사실 확인 및 외부 감독기관의 불법스팸 전송 사실에 대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차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6) 이메일 스팸 발송 시도에 대한 전송 차단을 하지 않는 경우 7) 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한 신원을 명확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 8) 부정 사용자(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그 외 필요한 조치	1) 타법에서 요구하는 스팸 관련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2)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객관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자간 자율 규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